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74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B.Metzler seel Sohn & Co. AG

2. 조치내용

□ **(금감원 원안)** 16억 5,640만원

□ **(수정의결)** 실제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계좌의 착오로 공매도가 발생한 점,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던 점, 과징금 규모가 회사의 이익 대비 과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50% 감경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공매도 규제 위반

○ B.Metzler seel Sohn & Co. AG는 2022.1.27.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현대차㈜ 주식 51,216주(96억 3,691만원)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0조 제1항 제1호,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